

환경부고시 제2012-21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10. 22.

환경부장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생산을 유도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지구 온난화 정보의 표지에 필요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란 공인된 인증기관이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지구온난화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인증하는 체계로 탄소배출량인증과 저탄소제품인증을 포함한다.
2. “탄소배출량인증”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등이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제7조에 의한 탄소

배출량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인증”이란 제5호에 따른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 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제7조에 의한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이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다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이 자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등의 체계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한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5.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지침으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6.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이하 “인증지침”이라 한다)이란 제6조의 1 제2항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율을 말한다.
7.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이란 제품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인증기관이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8. “사후관리”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유지상태 확인, 탄소성적표지 무단 사용 사례조사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등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제도운영
2.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의 개발
3. 탄소성적표지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6.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인증 수수료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지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7.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연구 등 부대사업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증기관은 세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인증업무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전년도 추진실적
 - 2. 인증업무 추진 목표 및 전략
 - 3. 전략별 중점 추진내용
 - 4. 사후관리 계획

제5조(인증심사원)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을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6조 (인증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탄소배출량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탄소배출량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저탄소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탄소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업무규정과 인증지침에 따라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저탄소제품인증에 대한 판정을 할 경우에는 제6조의1제2항의 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율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탄소배출량인증 또는 저탄소제품인증 제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정보는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제6조의1(인증지침 등) ① 인증기관은 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지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국제표준 및 국내 표준을 반영한다.

② 저탄소제품인증을 위한 인증지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동종제품의 평균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탄소배출량
2.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 최소탄소감축율

③ 인증기관은 동종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최소탄소감축율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탄소성적표지의 사용)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 받은 탄소성적을

[별표1]의 탄소성적표지 표시의 방법에 따라 재료 또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② 탄소성적표지의 가로길이는 최소 10(mm)이상이어야 하며, 별표의 표시 방법에 따라 도안·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성적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삭제
4.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구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④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탄소배

출량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간) ① 탄소배출량인증과 저탄소제품인증의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제품인증의 인증기간 연장 시에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인증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2.10.)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014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율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탄소배출량이 기준제품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저탄소제품으로 인증할 수 없다.

부 칙(2009.6.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6)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014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을 중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2.2.8)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014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을 중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제품으로 간주한다.

[별표1]

탄소성적표지 및 표시의 방법(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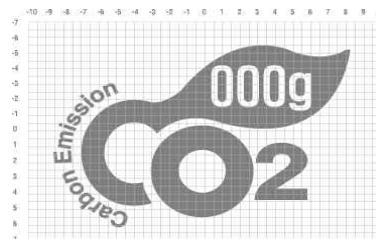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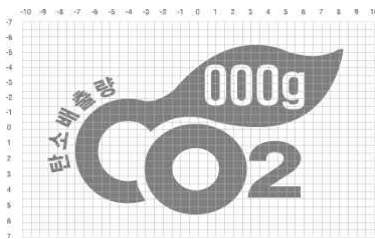
1. 환경성 정보 중 지구온난화 정보인 탄소배출량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형(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탄소배출량인증)



나) 도안요령



비고 1. 탄소성적표지 탄소배출량 도안의 별색컬러는 'C'와 '나뭇잎'은 PANTONE 368C로 하고, 'O2'는 PANTONE 3005C, '탄소배출량'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PANTONE 368C, PANTONE 3005C, PANTONE 138C,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2.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의 경우에 'C'와 '나뭇잎'은 C65+Y100으로 하고, 'O2'는 C100+M15로 하며, '탄소배출량'은 K10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C65+Y100, C100+M15, M50+Y100, K100입니다.
3.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4.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예: OO제품 1개 기준). 다만, 제품크기 제한, 금형 사용 등으로 도안에 적용기준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제2형(제품설명서·인터넷 등에 게재)

1. 제품개요	
2. 회사개요	
3. 지구온난화 정보	
※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2.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의 도안모형은 제1형으로 표시하고, 제품 설명서·인터넷 등에 제2형으로 게재합니다.

1) 제1형(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

가) 도안모형(저탄소인증제품)

(A형)



(B형)



나) 도안요령



1. 저탄소제품 도안의 별색 컬러는 PANTONE 348C로 사용합니다.
2.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는 C85+Y100 입니다.

3.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 반전형식의 경우, 배경색이 검은색 50% 이하인 경우에는 검은색 100% 1도로 사용하고, 검은색 50%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4. 도안의 하단 중앙에 제품명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OO제품 1개 기준)
5. 저탄소제품인증 도안 1형은 A형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B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인증 표지사용계획서”에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제2형(제품설명서 · 인터넷 등에 게재)

1. 제품개요	
2. 회사개요	
3. 지구온난화 정보	
※ 전과정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표시	
4. 인증정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본 환경성 정보는 타 제도의 환경성 정보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별표 2]

탄소성적표지 인증수수료(제9조 관련)

1. 탄소배출량인증 수수료

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

비목	산정 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 비고
1.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 제품이라도 다른 제품으로 간주한다.
 2.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8일과 현장심사 2일을 포함한 10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경우 현장심사일수 2일을 추가하며 최대 20일을 넘지 않는다.
 3. 신청제품이 최초 인증제품의 파생제품(변경 및 갱신인증 포함)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4일과 현장심사 2일을 포함한 6일로 하되, 파생제품이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 시점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심사 일수를 1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일수 1~2일을 추가한다.
 4. 동일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인증신청할 경우 기본심사일수는 서류심사 6일과 현장심사 2일을 포함한 8일로 하되, 서로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심사일수를 1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일수 1~2일을 추가한다.
 5.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

비목	산정 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 비고
1.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4일로 한다. 신청제품이 최초 인증제품의 파생제품(변경 및 갱신인증 포함)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2일로 한다.
 2.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2. 저탄소제품인증 수수료

비목	산정 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 비고
1.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8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12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일수 2일을 추가하며 최대 24일을 넘지 않는다.
 2. 신청제품이 최초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4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8일로 하되, 파생제품이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 시점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심사 일수를 1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일수 1~2일을 추가한다.
 3. 인증취득 후 동일사업장에서 추가 제품을 인증신청 할 경우 기본심사일수는 서류심사 6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10일로 하되, 서로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심사일수를 2일로 한다. 다만,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일수 1~2일을 추가한다.
 4.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탄소배출량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수수료

비목	산정 내역
기본수수료	제품군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 비고
1. 기본 심사일수는 1개 사업장의 1개 제품군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12일과 현장심사 6일을 포함한 18일로 한다. 다만, 최초 인증 시 동일 사업장에서 제품군이 1개 늘어날 경우 서류심사일수 2일, 현장심사일수 2일을 추가한다.
 2. 1개 제품군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기본 심사일수 기준에서 사업장 1개 늘어날 때마다 현장심사 2일을 추가한다.
 3. 다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제품군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12일과 현장심사 6일을 포함한 18일로 하되, 서류심사일수는 $[(\text{신청 제품군수}-1) \times 2]$ 일, 현장심사일수는 $[(\text{신청 제품군수}-1) + (\text{신청 사업장수}-1)] \times 2$ 일을 각각 기본 심사일수에 추가한다.
 4. 인증취득 후, 동일 사업장에서 추가 제품군을 인증신청하는 경우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6일과 현장심사 4일을 포함한 10일로 한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제품군이 1개 늘어날 때마다 서류심사 2일과 현장심사 2일을 추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저탄소제품 인증(□ 최초 □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 소	본 사 (전화 :) (팩스 :)	
	제조공장 (전화 :) (팩스 :)	
⑤설립연월일		⑥자 본 금 백만원
⑦대 상 제 품		⑧제품(브랜드)명
		⑨용 도
⑩기 준 제 품		⑪기준 탄소성적
⑫ 제품 규격	높 이	⑬공장도가격
	폭	
	길 이	⑭신청제품 연간매출(예정)액
	중 량	
<p>「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인증기관의 장 귀하</p>		
<구비서류> 1.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근거자료 2. 기준제품의 탄소배출량 인증신청 보고서 3. 저탄소제품 인증신청 보고서 4.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수 수 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최초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주 소	본 사 (전화 :) (팩스 :)		
	제조공장 (전화 :) (팩스 :)		
⑥설립연월일		⑦자 본 금	백만원
⑧제 품 군	⑨해당 상품(브랜드)명		⑩용 도
	*붙임에 작성 가능		
⑪ 전년도 총 매출액			백만원
⑫ 전년도 해당제품군 매출액			백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인증기관의 장 귀하</p>			
<구비서류> 1.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보고서 2.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서 3.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4.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품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체계 매뉴얼 등)			수 수 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탄소배출량 인증서

1. 상 호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
4. 공장소재지 :
5. 대표자성명 :
6. 제품명 :
7. 인증기간 :
8. 탄소배출량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탄소배출량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저탄소제품 인증서

1. 상 호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
4. 공장소재지 :
5. 대표자성명 :
6. 제품명 :
7. 인증기간 :
8. 탄소배출량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탄소제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서

1. 상 호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공 장 소 재 지 :
5. 대 표 자 성 명 :
6. 대 상 제 품 군 :
7. 인 증 기 간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군 검증체계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